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719 제출연월일: 2024. 7. 1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"그밖의 정치단체"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(헌법재판소 2020. 4. 23. 선고, 2018헌마551 결정)함에 따라,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군인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정치관여죄의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0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

법률 제 호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정당이나 정치단체"를 "정치단체 (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치단체를 말하며, 이하 "정치단체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정당이나 정치단체"를 "정치단체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94조(정치 관여) ① <u>정당이나</u>	제94조(정치 관여) ① <u>정치단체</u>		
<u>정치단체</u> 에 가입하거나 다음	(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	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한 기본법」 제33조제1항에 따		
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	른 정치단체를 말하며, 이하		
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	<u> "정치단체"라 한다)</u>		
처한다.			
1.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	1. <u>정치단체</u>		
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			
해하는 행위			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